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의 변경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의2).
- 물질등을 취급하는 자 등이 물질등의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 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이 법에 따른 승인 및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55조).

II. 검토의견

○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은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검찰청법」 제4조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¹⁾에 따른 것임.

○ 그러나 「검찰청법」 폐지²⁾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³⁾, 「공소청법」⁴⁾ 제정(공포일 2026.3.24.)으로 마약류

1)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하 생략)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생략)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생략)

[별표 2] 경제범죄(제2조제2호 관련)

1. ~ 9. (생략)

10. 보건·마약 관련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마약류를 단순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죄

라. 「의료법」 제87조, 제87조의2제2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및 제90조에 해당하는 죄

11.~13. (생략)

2) 「공소청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나. (생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라.~사. (생략)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에게 부여될 예정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⁵⁾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 또한, 위 법률들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⁶⁾⁷⁾이며,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의 시행일은 안 부칙 제1조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⁹⁾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나. (생략)

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6)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3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공소청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그 외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혜 진)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③ (생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죄
 - 1의2.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한 행위에 한정한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③ (생략)